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36631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69244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1. 13.
판 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4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7.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가산세 31,509,600원(취득세 관련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31,481,450원, 지방교육세 관련 납부불성실 가산세 18,770원, 농어촌특별세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9,380원의 합계)의 부과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가산세 14,027,540원(취득세 관련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4,016,090원, 지방교육세 관련 납부불성실 가산세 5,730원, 농어촌특별세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5,720원의 합계)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4항은 등기·등록 대상 재산권의 취득세에 관한 신고·납부 기한을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2. 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에 반하여 위 기한을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로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4

한하여 규정한 것으로 위헌 무효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원고들은 등기접수와 거래신고를 동시에 마치기 위해 노력했으나 등기 신청건수가 많고 담당공무원의 검토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등기접수일에 취득세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신고·납부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지방세법에서 등기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규정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실제 접수일로부터 1~2일 정도 취득세 신고·납부 지연을 묵인하는 과세관행이 있는바, 원고들의 취득세액 및 가산세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 과세관행과 달리 엄격하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내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

가) 법률의 시행령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4

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등 참조).

나)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본세에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 2항은 납세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 또는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취득세 등을 내지 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4

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설령 등기관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 날까지 취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해석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1998. 12. 31. 법률 제5616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은 등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로 정하였다가, 위 개정 후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로 정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은 이를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정하였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와 등기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세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그 개정에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세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4

그것에 통합하고 이러한 통합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그것들을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의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종전 등록세 관련 규정과 내용 및 체계가 유사한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이 각각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은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정하였고, 2019. 2. 8.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삭제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지방세법령의 개정 연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에 관하여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취지는 종전 등록세 관련 규정과 마찬가지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정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구 지방세법 제21조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정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징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를 "등기 또는 등록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보는 경우,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절차가 완료되는 날이 되는데, 그 등기 또는 등록절차는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완료될 수 없으므로, 결국 과세관청이 구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4

방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정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미준수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③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 2항은 취득세 등을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의 접수 전까지 선납할 것을 전제로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도 마찬가지 전제하에 취득세를 내지 아니한 경우를 등기 또는 등록신청의 각하사유로 정하고 있다.

④ 한편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정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보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내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기신청을 하였다가 등기신청을 취하하거나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반면, 등기관의 보정명령에 응하여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이후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신청의 접수번호에 따른 등기의 우선순위 확보를 위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등기신청을 먼저 하고 나중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나아가 등기신청을 먼저 한 경우라도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취하할 것인지 또는 순위확보의 이익을 위하여 보정명령에 응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이는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보정명령에 응한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율 범위를 벗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4

나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고 ·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 주식회사가 2016. 11. 30. [redacted]시 C 등 14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B가 같은 날 D 등 25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처럼 원고들의 등기 신청 건수가 많았고 그로 인해 담당공무원의 검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등기접수일에 취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취득세 납부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16. 11. 30. 그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날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함에도 2016. 12. 1.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6. 12. 2.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4

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가산세 등의 징수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등기접수일로부터 1~2일 정도 취득세 신고·납부 지연을 묵인하는 과세관행이 존재한다거나 원고들의 취득세액 및 가산세액이 많다는 이유로 다른 납세자들의 경우와 달리 원고들에게만 엄격하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4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2. 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등기·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끝.